



인 천 세 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1. 귀 회(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우리세관의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제1항제4호. 상표
2.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예:고추가루→고추씨가루), **수량(중량)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관세법 또는 상표법 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신고(등록)된 상표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각 신고인(관세사 등)께서는 수입신고를 의뢰하는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화주 등)에게 필수신고사항 중 특히 품명·규격·수량(중량)·가격 및 상표 등 필수신고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제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세관은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필수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화주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또는 제276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이 점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조사항) 한국관세사회장 및 각 지회장께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사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세관장



수신자 한국관세사회장,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회, 한국관세사회 인천항지회, 한국관세사회 서울지회, 한국관세사회 부산지회

주무관 양호 주무관 권용한 통관검사2과 과장 조건익 통관감시국장 전결 2024. 1. 26. 하춘호

협조자 행정사무관 김남섭 통관검사3과장 이자열 신항통관과장 송인숙

시행 통관검사2과-290 (2024. 1. 26.) 접수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항만통관검사2과 (항동) / www.customs.go.kr/incheon

전화번호 032-452-3249 팩스번호 032-722-3932 / yh12345@korea.kr / 대국민 공개

칭려한 당신,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관세청